

공청회 '19.5.21(화)

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(안)

2019. 5. 21.



환경부

I

검토배경

□ 제1차 이행연도

- '19.5.15일 현재, 거래 참여 업체 간 배출권의 수급 불균형 발생
 - 시장 전체적으로 여유물량은 3,271만톤 수준이나, 배출권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90개 업체는 1,357만톤 부족
 - * 제2차 계획기간('18~'20) 동안 가용한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은 1,400만톤

<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과부족 분석 내용 >

구 분	배출권 부족업체	배출권 여유업체	시장전체
업체 수(개)	190	400	590
물 량(만톤)	<u>△ 1,357</u>	4,628	3,271

□ 제2차 이행연도

- 제2차 이행연도는 제1차 이행연도 대비, 사전할당 등 배출권 공급량이 감소될 예정인바, 전체 배출권 시장의 부족상태 심화 우려
 - * 배출권 사전할당량 : 57,219만톤(제1차 이행연도) → 53,864만톤(제2차 이행연도)
 -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경우, 차입·장외거래 등으로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부족물량이 제2차 이행연도로 이전 가능
 - 제2차 이행연도의 유동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 필요

☞ 정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 유동성을 위하여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의 일부 제한 필요

II

이월 제한(안)

- ◇ **순매도량 기준으로 이월량을 설정, 잉여배출권의 매도 유도**
- ◇ 제1차 이행연도에 대하여는 매도방식 미규정, 매수물량의 이월허용, 순매도량의 기준 완화 등 **기업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**
 - * 배출권거래제 참여 주요 5개 업종(발전·철강·정유 등)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

○ (제1차 이행연도 승인기준)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이월 승인

- 해당 업체의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*의 3배

- 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(해당업체에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이 할당된 날부터 제2차 이행연도로의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) '매도량 - 매수량(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)'
- * 단, 1차 이행연도에 한하여, ①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(거래+유상할당)은 이월 가능, ② 순매도량 계산 시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제외

-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 tCO₂-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7.5만 KAU, 2.5만 tCO₂-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만 5천 KAU

○ (제2차 이행연도 승인기준)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이월 승인

- 해당 업체의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*의 2배

- 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(해당업체에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이 할당된 날부터 제2차 이행연도로의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) '매도량 - 매수량(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)'
-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 tCO₂-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5만 KAU, 2.5만 tCO₂-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만 KAU

☞ 이 경우, 제1차 이행연도에 최소 591만톤의 배출권 공급 전망

IV

후속 조치

□ 행정절차 상의 일정 변경

- 현행 이월·차입 신청기간(6월 1일 ~ 6월 10일)을 8월 1일부터 8월 10일
까지로 변경, 배출권 거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
- * 기존 절차 : 배출인증량 통보(5.31), 추가할당·취소량 통보(5.31), 이월·차입 신청
(인증량 통보후 10일 이내), 인증량 및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의의신청·검토(~8.31)

□ 향후일정

- 공청회(5.21)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견 등 수렴하여 심의안건 상정
- 할당위원회 상정(5.23~28) 및 시행(5.31~)

□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

법률	시행령
제5조(할당계획의 수립 등) ① 할당계획에 다음 사항 포함 10. 제28조에 따른 이월·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 기준 ⑤ 할당계획 수립·변경은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	제3조(할당계획의 수립 등) ⑦ 법 제5조 제5항 단서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은 다음과 같음 1.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이월·차입·상쇄 기준
제28조(이월·차입) ① 배출권 보유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 이월	제37조(이월·차입 절차) ①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 후 10일 내로 신청서 제출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 결정하여 통보

□ 「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('18.7월)」

Ⅶ.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기제

③ 이월 및 차입의 기준

□ (이 월)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계정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*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(법 제28조 제1항)

*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

○ (계획기간 내 이월) 할당대상업체*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 간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그 수량과 관계없이 승인하고, 제2차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

*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권 계정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

○ (계획기간 간 이월) 할당대상업체의 제3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하고, 제3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만 이월

- 해당 업체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*

*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계획기간 중(해당 업체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할당받은 날부터 제3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) (매도량 - 매수량) ÷ 해당 업체가 적용 받은 제2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 수

-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 tCO₂-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2.5만 KAU, 2.5만 tCO₂-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5천 KAU

현행	변경안
<p>VII.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기제</p> <p>③ 이월 및 차입의 기준</p> <p>(계획기간 내 이월) 할당대상업체*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 간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그 수량과 관계없이 승인하고, 제2차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</p> <p>*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권 계정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</p>	<p>(계획기간 내 이월) 할당대상업체*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 간 이월 신청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하고, 제2차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</p> <p>*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권 계정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</p> <p>- (제1차 이행연도)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이월 승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업체의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*의 3배 <p>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(해당업체에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이 할당된 날부터 제2차 이행연도로의 이월을 신청한 전일까지) '매도량 - 매수량(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)'</p> <p>* 단, 1차 이행연도에 한하여, ①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(거래+유상할당)은 이월 가능, ② 순매도량 계산 시 계획 확정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 tCO₂-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7.5만 KAU, 2.5만 tCO₂-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만 5천 KAU

- (제2차 이행연도) 다음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이월 승인
- 해당 업체의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*의 2배
- 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(해당업체에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이 할당된 날부터 제3차 이행연도로의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) '매도량 - 매수량(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)'
-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 tCO₂-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5만 KAU, 2.5만 tCO₂-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만 KAU